

〈특별호〉

만족스러운 조세제도가 가능할까?: 세금 지각에서 비합리성과 이기성*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조세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판단에서 합리성과 이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한국 성인의 가장 평균적인 모습을 묘사한 기준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수준과 같은 세금 책정 요인과 더불어, 국적, 학력, 직업, 거주지 점유형태, 재산출처, 정치성향, 전과여부 등과 같이 실제 세법에서 고려하지 않는 요인들이면서 일반인들의 세금 판단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요인들을 변화시켜 총 16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1,361명의 참가자들은 웹페이지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된 16개의 시나리오 중 한 가지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 주인공이 납부해야 할 적절한 소득세를 세율의 형태로 부과하였다. 연구 결과, 연소득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거주자에게 전세나 월세 거주자에게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였다. 둘째, 소득세율 부과에 있어서 소득수준과 직종 간 이원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대상이 회사원일 때와 자영업자일 때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된 세율에 차이가 없었지만, 대상이 전문직일 때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주인공의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거나 낮다고 지각한 경우보다 자신의 소득과 비슷하다고 지각한 경우에 그 대상에게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적정세금 판단에 부분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종합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세금 지각, 적정 세율, 비합리성, 이기성, 내집단 편향

* 본 연구는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후원을 받은 “납세자의 심리적 가치에 대한 실험적 분석” 연구의 일환이었음을 알려드리며, 2012년 8월 23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대외심포지움 “조세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양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신저자: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E-mail: tkhur@korea.ac.kr

국가 재원의 73%가 조세 수입으로 충당될 만큼(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¹⁾ 참고) 세금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조세당국은 조세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 집행하기 위해 조세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체 연구기관(한국조세연구원²⁾)을 설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연구결과를 조세제도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조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데(박명호, 정재호, 2011; 연합뉴스, 2010. 10. 6.),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은 조세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납세자들이 납세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칭하는 조세저항 현상(지성근, 1991)에는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며, 그것이 얼마나 공평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의 이면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조세제도를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 또한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66%가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연합뉴스, 2010. 10. 6.), 같은 해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³⁾은 21.7%로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인 25.7%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으며, 이는 OECD 36개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낮은 수치였다(연합뉴스, 2011. 2. 6.). 이는 실제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소득세제가 상당히 공정

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예, 박성배, 홍정화, 김선구, 2007), 이와는 별개로 납세자들은 조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김진섭, 2008).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조세부담률 수치나 세금 자체와 관련한 지표들만을 가지고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전문가들과는 달리, 일반인들의 조세제도에 대한 판단에는 세금과 관련한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 없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가치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사람들은 상황만 주어진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쓸 용의가 있고(연합뉴스, 2010. 10. 6.), 특히 적발이나 처벌의 위험이 낮다고 생각될 때에 탈세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려 한다는 연구 결과(박명호, 정재호, 2011)는 사람들이 조세상황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즉, 국가 운영을 위해 지출해야 할 예산 중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 자신의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가 그 세금의 부족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는 꺼리면서 자신은 주변 사람들과 동등하게 국가 운영의 혜택을 받길 원하는 이기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이성적이며 합리적인지 또는 얼마나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인지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간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와 관련된 연구들과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향과 관련된 연구들을 논하고 조세 상황에서 이러한 인간의 판단경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비합리성과 자기중심적 경향

심리학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인지, 비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1) <https://www.digitalbrain.go.kr/>

2) <http://www.kipf.re.kr/>

3)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채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초기 사회인지 연구 분야에서는 인간을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진한 과학자(*naive scientist*)로 간주했다(Fiske & Taylor, 2008). 순진한 과학자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미래에 벌어질 사상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사건의 발생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이내 Simon(1972)과 Tversky와 Kahneman(1974) 등의 인간이 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Simon(1972)은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갖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판단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Tversky와 Kahneman(1974)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림법(*heuristic*)⁴⁾을 사용하여 판단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인간이 어림법을 사용하여 판단한다는 제안은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때로는 그 과정이 매우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판단의 결과도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ahneman, Slovic & Tversky, 1982).

하지만 Funder(1987)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그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오류(*error*)’와 실생활에서의 ‘실수(*mistake*)’를 구분하면서, 가외변인이 통제되어 있는 실험실 상황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 판단은 실제 일상 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때때로 나타나는 비합리적 판단은 오류가 아니라 실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나타나는 형태의 추론방법이 때로는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4) *heuristic*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어림법, 휴리스틱, 방략, 추단, 발견법 등 다양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한규석(2009)의 제안에 따라서 어림법이라고 칭할 것이다.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Fiske & Taylor, 2008, pp.198), 특히, 이러한 자동적 정보처리과정은 진화적으로 발달시켜 온 하나의 적응기제라는 관점도 존재한다(Gigerzer, 2007). 즉, 추론 과정 자체는 다소 주먹구구식일 수 있지만, 그러한 형태의 추론이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정확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판단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일련의 논의들을 종합하였을 때, 그러한 판단이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인간이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판단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비합리적 판단 경향은 경제학 분야는 물론이고(예, Simon, 1972), 법적 판단(예, 최승혁, 허태균, 2012; Martin, 1994), 일상에서의 판단(예, Perilloux, Easton & Buss, 2012; Ross, Amabile & Steinmetz, 1977; Tversky & Kahneman, 1974) 등 특수한 장면부터 일상적 장면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비합리적인 모습은 다시 자기 중심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고(*self-serving bias*; Myers, 2008; Taylor & Brown, 1988),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귀인을 하거나(*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Mezulis, Abramson, Hyde & Hankin, 2004),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Myers, 2008). 또한, 사람들은 분배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타인보다 많이 할당하거나(Lane & Messe, 1972; Messick & Sentis, 1979) 협업을 하고 나서 자신이 일한 정도를 더 높게 보고(Savitsky, Van Boven, Epley & Wight, 2005)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자신이 내집단이라고 지각하

는 타인에게 확장되어 일어난다(Myers, 2008). 인간은 내집단을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 혹은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이라고 부른다. 즉,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때도 그러하듯이, 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며(Brewer, 1979), 그들의 성공은 능력과 노력에, 실패는 운과 외부환경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Wilker & Taylor, 1979).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내집단으로 지각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같은 학교, 직장 동료 등 사회적으로 같은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Locke, Craig, Baik & Gohil, 2012),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비슷하다거나(Montoya & Horton, 2004), 심지어 단지 자신이 주문한 내용을 따라 읽는 종업원(van Baaren, Holland, Steenaert & van Knippenberg, 2003) 등 물리적으로 같은 집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내집단이 물리적·실체적으로 같은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동질감(similarity) 같은 심리적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Dunlop & Beauchamp, 2011).

인간의 본성이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세금을 지각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비합리성과 이기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세 연구들은 조세상황에서의 인간의 비합리성과 이기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통계학적 변인이나 조세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추론되는 조세에 대한 태도, 가치관, 공정성 지각 등의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배수진, 심태섭, 2011). 기존의 연구의 초점과 같이 조세 관련 변인들이 조세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것이라 추론되는 변인들이 조세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조세 판단에 대한 인간의 비합리성과 이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존 연구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성실히 내는가 또는 탈세하는가의 틀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러한 시각 속에 투영된 사람들의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을 확인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기준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기준 시나리오 내에서 8가지 변인(소득, 국적, 학력, 직업, 정치성향, 거주형태, 재산출처, 범죄진과)을 각각 한 가지씩 조작하여 시나리오를 제작하였고, 이에 더해, 소득과 직업 간에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과 직업을 교차하여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총 16개의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기준 시나리오 조건과 각각의 변인을 조작한 시나리오 조건을 비교 분석하는 집단 간 설계였다. 총 1,600명의 인터넷 조사 참가자들은 국내 평균 연령(45세 이상 800명, 45세 미만 800명)과 국내 평균 연 소득(4,400만원 이상 800명, 4,400만원 미만 800명)에 따라 모집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연령 및 연 소득 분포를 균등하게 반영하여 16개의 시나리오 각각의 조건에 100명씩 무선향당하였다. 이들 중 시나리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참가자들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는 1,361명이었고, 각 시나리오 조건별로는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기준 시나리오 조건 82명, 연 소득 중(8,800만 원) 조건 97명, 연 소득 고(3억 원) 조건 86명, 외국 국

직 조건 83명, 고학력(MBA) 조건 88명, 저학력(고졸) 조건 86명, 전문직(고급공무원) 조건 87명, 자영업자 조건 84명, 소득 중-전문직(변호사) 조건 91명, 소득 중-자영업자 조건 97명, 보수 정치성향 조건 89명, 진보 정치성향 조건 80명, 전세 거주 조건 69명, 월세 거주 조건 59명, 상속 재산 조건 91명, 범죄전과 있음 조건 88명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1.34세(SD=11.24)였고, 범위는 19세부터 70세까지였다.

연구 도구

기준 시나리오는 통계청에서 공시한 2010년도 가구당 월 평균 가계수지(통계청, 2012. 3. 21)를 바탕으로, 한 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가구원 수, 가장의 나이, 거주지 점유형태, 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평균적인 가구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준 시나리오에는, 가구원 수는 3인, 가장의 나이는 45세, 연 평균 소득은 4,400만원(월 평균 370만원), 월 평균 가계 소비는 300만원, 거주 종류는 아파트, 거주 형태는 자가, 평균 주거 면적은 65.3m²(20평)로 반영되었다(표 1 참조).

기준 시나리오

올해 45세의 김00씨(남)는 4년제 대학교를

(을)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국내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 부인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3인 가족의 가정으로 그의 부인은 전업주부이다 그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적 관점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특별한 선호가 없다 또한 그는 준법의식이 높은 편이어서, 큰 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 그는 현재 연봉으로 세전 약 3,500만 원(매달 약 29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65.3m²(20평) 규모의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랫동안 성실히 절약하고 저축하여 오피스텔 한 채를 구매하여 월세로 월 80만 원의 임대수입도 올리고 있다 종합하자면 김00씨는 연간 총 약 4,400만 원, 월 약 37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교육비를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매달 약 300만 원을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은 기준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또한, 기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내용 중 밑줄 친 부분 각각을 조작하여 15개의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기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작한 변인과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조작한 변인들은 현행 세법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소득 제외),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정치적 또는 도덕적 판단에

표 1. 2010년도 한국 가구의 평균적인 특징

내용	통계청 자료	반영
평균 가구원 수	3.31명	3인 가구
평균 가장 나이	45.27세	45세
평균 소득	월 3,631,713 원	연 4,400만 원(월 370만 원)
평균 소비	월 2,960,892 원	월 300만 원
최빈 거주 종류	아파트 (47.1%)	아파트
최빈 점유 형태	자가 (54.2%)	자가
평균 주거면적	65.3m ²	65.3m ² (20평)

표 2. 기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작한 변인과 그 내용

조작 변인 (시나리오 수)	조작 내용
소득수준(2)	연간 총 약 8,800만 원, 월 약 730만 원의 소득 / 연간 총 약 3억 원, 월 약 2,500만 원의 소득
직업(2)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는 고급 공무원(전문직)이다. / 본인 소유의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다.
소득과 직업(2)	연 소득 8,800만 원 x 변호사(전문직) / 자영업자
학력(2)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교의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졸업 /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거주지 점유형태(2)	2년째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 매달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고 있다.
재산출처(1)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오피스텔 한 채를 상속
국적(1)	그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타인종이지만, 직장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있다.
정치성향(2)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 보수적이며 보수정당을 지지한다. / 진보적인 가정에서 자라 진보적이며 진보정당을 지지한다.
전과여부(1)	준법의식이 별로 높지 않아서, 가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고 몇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적도 있다.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 부과상황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얼마나 배제하고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의 조작은 평균 연 소득 4,4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 상 3~4구간의 경계인 연 소득 8,800만원과 4~5구간의 경계인 연 소득 3억 원으로 조작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누진세제 구간의 차이를 충분히 지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학력과 직업 변인을 조작하였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고(교육과학기술부, 2011. 8. 17), 나아가 이러한 욕구가 대우가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통계청, 2011. 12. 14). 이에 더해 소득세율에 대한 소득과 직업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준소득(4,400만원)에서의 직업조작에 더해 8,8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조건에서도 직업을 추가 조작하였다. 최종적으로, 소득수

준과 직업 간 조작은 2(연소득 4,400만원, 8,800만원) × 3(회사원, 전문직, 자영업자) 집단 간 설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경제적인 지위와 관련된 변인도 선정하였다. 현재 경제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집 마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6%가 자신의 집을 사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게다가 집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면서 스스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이삼식, 장경섭, 김선업, 이병훈, 송다영, 박종서, 김은정, 최효진, 2011). 이러한 흐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거주지 점유 형태와 재산출처 변인을 선정하여 조작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문제시되고 있기에 국적 변인을 선정하였다(예, 부산일보, 2012. 5. 2.). 또한, 정

치적 성향 변인을 조작하였는데, 이는 총선 및 대선 등 잇단 큰 선거를 앞두고 성장 정책을 선호하는가 분배 정책을 선호하는가, 소득 재분배를 한다면 어떤 방법과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같은 이슈와 관련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고, 따라서 이들 정당 중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가 사람들의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김동수, 김옥환, 이상현, 정태연, 2011). 마지막으로 전과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전과여부가 그 대상에 대한 도덕성 판단과 연결되기 때문에(Roberts, 1997),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대상에 대한 세금 부과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었다.

측정 및 절차

참가자들은 먼저 성별, 연령, 직업, 자신의 소득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연령과 소득 응답을 바탕으로 16개의 시나리오 조건 중 한 조건에 무선향당되었다. 참가자들은 할당된 시나리오를 보고 난 후 그 시나리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개의 내용 확인 문항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같은 시나리오를 읽도록 지시받았고, 그 후에 각 시나리오별로 조작된 내용을 확인하는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조작점검 문항에서 오답을 선택한 사람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위에 묘사한 인물의 경제적 수준은 본인의 경제적 수준과 비교해서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1: 매우 낮다 ~ 4: 비슷하다 ~ 7: 매우 높다’의 범위에서 응답하였고, 이어 ‘귀하가 생각하기에 위의 인물이 납부해야 할 연간 소득세율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 100%의 범위에서 주인공이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득세율을 주관식으로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기준 시나리오

조건에서의 부과된 세율과 각 변인을 조작한 시나리오 조건에서의 부과된 세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득세율에 대한 소득과 직업 변인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경제적 수준과 비교하여 시나리오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의 지각 정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 조건을 통합하여 시나리오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이 본인보다 낮다고 응답한 집단, 비슷하다고 응답한 집단, 높다고 응답한 집단 간 부과된 세율의 차이가 어떠한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각 조건별 응답자 특성의 동질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각 시나리오 조건별로 한국의 평균 연령(45세 이상/이하)과 연 평균 소득(연 4,400만 원 이상/이하)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100명씩 할당하였지만, 각 조건별 제시된 시나리오를 읽은 후 내용확인질문에 틀린 참가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실제 분석에 사용된 연구참여자의 수는 각 조건별로 59~97명의 분포를 보였다. 이에 본 분석에 앞서, 실제 분석에 사용된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이 각 조건 간 서로 동질한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응답자 특성별로 X^2 검증을 실시하였다(부록 참고). 그 결과, 성별, $X^2(15)=20.428$, $p=.156$, 직업, $X^2(90)=84.616$, $p=.640$, 개인소득, $X^2(15)=3.747$, $p=.998$, 연령, $X^2(60)=49.605$, $p=.828$, 등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각 시나리오 조건 간 분포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건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포가 동질하다는 본 연구의 전체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금에 대한 합리적 판단

본 분석은 사람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리고 소득세 부과 시에 법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변인들에 대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배제하여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변인들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분석은 기준 시나리오의 주인공에게 부과한 소득세율과 각 변인들의 조작에 따른 소득세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형태였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4,400만원의 소득에 대해 평균 9.89%(SD=8.28)의 세율을 부과하였다. 각 시나리오 조건에서 부과한 소득세율과 이 기준 시나리오 조건에서의 소득세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각 변인별로 시나리오 조건 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참고).

먼저, 소득수준별 세금 부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 4,400만원 조건(기준 시나리오)과 연 소득 8,800만원 조건(M=11.01, SD=8.69), 연 소득 3억원 조건(M=15.53, SD=10.01)에 부과한 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262)=9.398, p<.001, \eta_p^2=.067$. 이러한 차이가 어떤 조건 간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확인하

표 3. 변인 조작에 따른 부과된 소득세율의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변인명	조작내용	M	SD	n	F
연소득	4,400만원(기준) ¹⁾			97	9.398***
	8,800만원	11.01	8.69	86	
	3억원	15.53	10.01		
학력	대졸(기준) ¹⁾	8.59	5.24	88	.688
	MBA	9.16	7.87	86	
	고졸				
거주지 점유형태	자가(기준) ¹⁾	7.23	6.10	69	3.238*
	전세	7.41	6.64	59	
	월세				
재산출처	저축(기준) ¹⁾	8.87	6.17		.858
	상속			91	
국적	한국인(기준) ¹⁾	10.05	6.43	83	.019
	외국인				
정치성향	무관심(기준) ¹⁾	8.00	5.33	89	1.613
	보수	9.05	6.89	80	
	진보				
전과여부	교통관련전과 유(기준) ¹⁾			88	1.120
	전과 무	8.64	7.16		

주. 1) 기준 시나리오의 소득세율 평균(SD)은 9.89(8.28), n=82였음.

*p<.05, ***p<.001

기 위해 사후검정(LSD)을 실시한 결과, 3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4,400만원이나 8,8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였다, $p \leq .001$. 하지만 4,400만원과 8,800만원 조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p = .409$.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주인공의 학력을 조작한 경우, 기준 조건(대학교 졸업)과 고학력 조건(MBA; $M=8.59$, $SD=5.24$), 저학력 조건(고졸; $M=9.16$, $SD=7.87$) 간 소득세 부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253) = .688$, $p = .503$, $\eta_p^2 = .005$.

경제적인 변인을 조작한 결과를 보면, 거주지 점유형태를 조작한 경우에 자가 거주자(기준 시나리오)와 전세 거주자($M=7.23$, $SD=6.10$), 월세 거주자($M=7.41$, $SD=6.64$) 조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F(2, 207) = 3.238$, $p = .041$, $\eta_p^2 = .030$. 이러한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LSD) 결과, 자가 거주자에 부과한 세율이 전세나 월세 거주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p = .024 \sim .044$), 전세와 월세 거주자에 부과한 세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891$). 재산 출처를 조작한 경우에는 저축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조건(기준 시나리오)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조건($M=8.87$, $SD=6.17$) 간에 부과된 소득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71) = .858$, $p = .356$, $\eta_p^2 = .005$.

시나리오 주인공의 국적을 외국인으로 조작했을 때($M=10.05$, $SD=6.43$)와 주인공이 한국인인 기준 시나리오 조건 간의 부과된 소득세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63) = .019$, $p = .891$, $\eta_p^2 < .001$. 정치성향을 조작하였을 때에는 정치적 중립(기준 시나리오), 보수($M=8.00$, $SD=5.33$), 진보($M=9.05$, $SD=6.89$)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248) = 1.613$, $p = .201$, $\eta_p^2 = .013$. 전과 여부를 조작한 경우($M=8.64$, $SD=7.16$)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168) = 1.120$, $p = .292$, $\eta_p^2 = .007$.

이에 더해, 소득 세율에 대한 연 소득(4,4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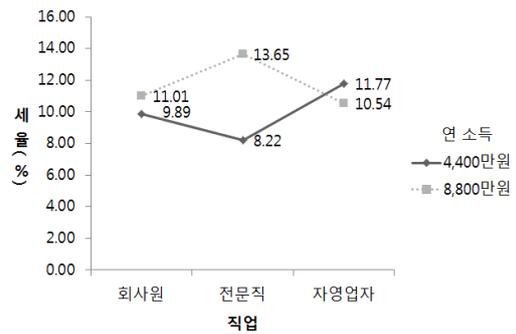


그림 1. 소득세율에 대한 직업과 소득의 이원상호작용

원대 8,800만원)과 직업(회사원 대 전문직 대 자영업자)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회사원($M=10.50$, $SD=8.50$, $n=179$)과 전문직(고급공무원/변호사; $M=11.05$, $SD=10.71$, $n=182$), 자영업자($M=11.11$, $SD=10.78$, $n=181$) 간 부과된 소득세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2, 536) = .235$, $p = .791$, $\eta_p^2 = .001$. 하지만, 연 소득 4,400만원 집단($M=9.94$, $SD=9.93$, $n=253$)과 8,800만원 집단($M=11.72$, $SD=10.09$, $n=289$) 간에는 소득세율 부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F(1, 536) = 4.276$, $p = .039$, $\eta_p^2 = .008$. 또한, 소득세율에 대한 소득과 직업 간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F(2, 536) = 5.228$, $p = .006$, $\eta_p^2 = .019$ (그림 1 참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변인별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4,400만원 소득 집단 내에서의 직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사원($M=9.89$, $SD=8.28$, $n=82$), 전문직(고급공무원; $M=8.22$, $SD=5.92$, $n=87$), 자영업자($M=11.77$, $SD=13.77$, $n=84$) 간에 소득세율 부과에 있어서 경계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250) = 2.779$, $p = .064$, $\eta_p^2 = .022$. 또한, 8,800만원 소득 집단 내에서도 회사원($M=11.01$, $SD=8.69$, $n=97$), 전문직(변호사; $M=13.65$, $SD=13.22$, $n=95$), 자영업자($M=10.54$, $SD=7.30$, $n=97$) 간의 차이가 경계선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286) = 2.681$, $p = .070$, $\eta_p^2 = .018$. 이

에 더해, 각 직업 집단별로 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사원 집단($F(1, 177)=.771, p=.381, \eta_p^2=.004$)과 자영업자 집단($F(1, 179)=.592, p=.443, \eta_p^2=.003$)에서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소득세율 부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직 집단에서는 8,800만원(번호사)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4,400만원(고급공무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F(1, 180)=12.420, p=.001, \eta_p^2=.065$. 따라서 단순 주효과 분석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소득과 직업의 상호작용효과는 전문직 집단에서 소득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소득세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에 투영된 이기성

본 분석은 참가자들 본인의 경제적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시나리오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이 어떠하다고 지각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의 주인공에게 부과한 세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나리오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이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응답지 1~3에 응답한 경우)는 낮음 집단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응답지 4에 응답한 경우)는 유사함 집단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응답지 5~7에 응답한 경우)는 높음 집단으로 변환 코딩하여 시나리오 주인공에게 부과한 소득 세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그림 2 참고). 단, 실제 소득 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각 집단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의 개인소득은 공변인으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낮음($M=9.52, SD=9.61, n=408$), 유사함($M=8.17, SD=5.66, n=334$), 높음($M=11.22, SD=8.81, n=619$) 조건 사이에 소득세율 부과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1357)=15.7736, p<.001, \eta_p^2=.023$. 이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두 집단씩 묶어서 각각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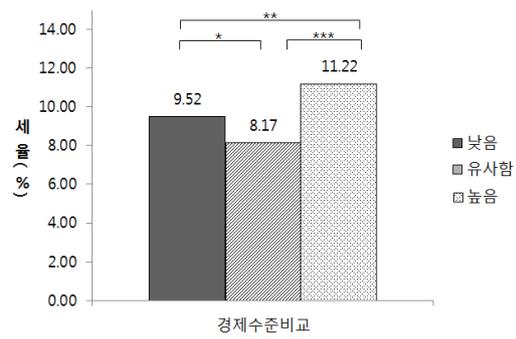


그림 2. 본인과 상대방의 경제수준비교에 따른 세율부과의 차이

주. * $p<.05$, ** $p<.01$, *** $p<.001$

집단과 유사함 집단, $F(1, 739)=5.176, p=.023, \eta_p^2=.007$, 낮음 집단과 높음 집단, $F(1, 1024)=9.102, p=.003, \eta_p^2=.009$, 유사함 집단과 높음 집단, $F(1, 950)=36.781, p<.001, \eta_p^2=.037$, 각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한 경우에 가장 낮은 세율을 부과했고, 다음으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지각한 경우에 세율을 높게 부과했으며, 상대방이 자신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경우에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납세 순응이나 탈세 행동에 납세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 기존 연구의 틀을 넘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세 판단에 투영된 사람들의 비합리성과 이기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부과 시에 소득세법과 관련된 변인들만 고려하고 관련되지 않는 변인들은 합리적으로 배제하여 판단하는지, 세금을 자신과 유사한 내집단에게 유리

한 형태로 부과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시나리오 주인공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한 인구사회통계학적인 특성을 조작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소득세율 부과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선정된 변인들이 현재 세법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들 변인의 조작에 따른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타인의 세금을 지각할 때 이와 같은 특성들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 따른 국적 조작,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학력 및 재산 출처 등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거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변인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영역과 조세 영역을 구분하여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같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소득세율 부과를 하는 데에 판단해야 할 대표적인 요인이 납세자의 소득이라는 점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비합리적인 양상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소득은 같지만 거주지를 점유하고 있는 형태에서만 차이가 나도록 조작하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는 같은 소득수준에 따라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보다 소득세율을 더 높게 부과했다는 것은, 소득의 양은 물론 자신의 집을 소유하였느냐의 여부에 상당한 심리적인 가치를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론컨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났다고보다는, 현재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제적 자원이 많은 사람으로 지각되고,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에 더 경제적으로 부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미래 성공 가능성을 담보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소득세율 판단은 다소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

또한, 연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세율 부과 차이 분석에서 연 소득이 4,400만원인 집단과 8,800만원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연소득 3억 원의 소득 집단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누진적인 과세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4,400만 원과 8,800만 원을 충분히 다른 소득 구간으로 지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직종을 조작하여 소득세율 부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직종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직종이 회사원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연 소득이 4,400만원이든 8,800만원이든 소득세율 부과 차이가 없었지만,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4,400만원의 소득과 8,800만원의 소득 간 세율이 다르게 부과되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나,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소득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지각하여 반응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 주인공의 소득과 자신의 소득의 비교를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판단한 결과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 있다. 사

5) 실제로 국가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저축의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거나, 취득세를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최대한 법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시나리오 주인공의 소득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율을 낮게 책정하였다. 소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실질적인 양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 결과는 특기할만하다. 즉, 자신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누진세제에 의거했을 때 합리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이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누진세제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상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기적으로 자신의 혹은 내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이기성이 조세 분야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특히,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기 위하여 그러한 이기성을 내집단으로까지 확장할 것이라는 본 연구자들의 예상을 지지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에 대한 판단의 기준점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Kuiper & Rogers, 1979; Rogers, Kuiper & Kerker, 1977). 따라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이기적인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집단에게까지 확장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으로 같은 집단에 속해있지 않고 동질성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를 내집단으로 지각한다는 기존 연구들(예, Dunlop & Beauchamp, 2011; Montoya & Horton, 2004; van Baaren et al., 2003)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자신과 소득이 비슷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를 내집단으로 지각하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듯이 내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현재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합리성과 비합리성, 그리고 이기성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세제도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한다. 하지만, 부동산 부분에서 무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가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에 어느 정도 제도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와 통찰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형태의 제도를 고안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조세제도를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계점

본 연구는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지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과 이기성을 탐구하고자 설계되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와 그것을 야기한 심리적인 기제에 대한 논의를 끌어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판단에 대한 비합리성과 이기성 기제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력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제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설계상 소득 수준과 직업의 조각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일반적인 직장인이라 할 수 있는 회사원, 일반적인 자영업자라 할 수 있는 음식점 사장, 이와 대조적으로 유능한 전문직 종사자로 행정고시 출신 고급공무원과 굴지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전문직 종사자로 선정하고 조작하였다. 그러나 회사원 조건, 자영업자 조건에서는 소득에 따라 그 직업이 다르지 않았지

만, 전문직 종사자 조건에서는 소득에 따라 고 급공무원과 변호사로 다르게 조작하여, 소득세 을 부과에 대한 소득과 직업 간의 상호작용효과 를 해석하는 데 전문직 안에서도 종사하는 분야 가 달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는 이론의 여지를 남긴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입변인을 최소화하여 소득 에 따라 종사하는 분야를 다르지 않도록 설계하 여 소득세율에 대한 소득과 직업 간 관계를 명 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연 평균 소득인 4,400만 원을 바탕으로, 이보다 높은 8,800만 원과 3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 조작을 통하여 소득 변화에 따른 세금부과의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연구 설 계 상 연 평균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는 대 상자를 설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소득수준에 따 라 합리적으로 누진세제를 적용하는 지에 관한 온전한 소득 조작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반영한 전 소득 구간의 조작을 통하여, 사람들이 각 소득구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조사의 통상적 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즉, 현실적으로 인 터넷 조사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본 연구에서도 연구 자들의 설계에 맞게 적절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조 사를 실시하는 자료수집 방법의 특성상, 상대적 으로 인터넷에 친숙한 사람들로 패널이 편향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심리적 특성이 혼입되 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이와 소득수준 등을 집단별로 할당하는 등 인구통계학적인 편향을 최소화하려 고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각 집단별 응답자들 의 특성이 이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조사가 태생적으로 가지

고 있는 한계점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추 후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8. 17). 2011년 교육기본 통계 조사 결과 발표.
- 김동수, 김옥환, 이상헌, 정태연 (2011).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유 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4), 461-483.
- 김진섭 (2008).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세무인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0), 142-150.
- 박명호, 정재호 (2011).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한국 조세연구원.
- 박성배, 홍정화, 김선구 (2007). 소득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정성에 대한 세무전문가 집단의 인식도 연구. 대한회계학회, 12(2), 311-340.
- 배수진, 심태섭 (201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 에 대한 연구동향: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세 무학회지, 12(3), 215-273.
- 부산일보 (2012. 5. 2.). [‘청소년 기자’ 광장] “외 국인 노동자 차별·편견 사라지길”.
- 연합뉴스 (2010. 10. 6). 직장인 66% “나, 세금 많이 낸다”
- 연합뉴스 (2011. 2. 6). 韓 조세부담률 OECD 8번 째로 낮아.
- 이삼식, 장경섭, 김선업, 이병훈, 송다영, 박종서, 김은정, 최효진 (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 갈등.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지성근 (1991). 납세자의 조세저항행위와 그 대 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세무학과, 4, 133-156.
- 최승혁, 허태균 (2012). 잘난 사람의 범죄는?: 처 별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과 그

- 심리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27-140.
- 통계청 (2011. 12. 14). 2012년 사회조사 결과.
- 통계청 (2012. 3. 21).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보도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1).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 Brewer, B. M.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2), 307-324.
- Dunlop, L. W., & Beauchamp, R. M. (2011). Does similarity make a difference?: Predicting cohesion and attendance behaviors within exercise group settings.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5(3), 258-266.
- Fiske, T. S. & Taylor, E. S. (2008). *Social Cognition*. NY: McGraw-Hill.
- Funder, C. D. (1987). Errors and mistakes: Evaluating the accuracy of social judg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1(1), 75-90.
- Gigerenze, G. (2007). *Gut feelings: the intelligence of the unconscious*. NY: Viking.
- Kahneman, D., Slovic, P., & Tversky, A. (1982).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iper An. N. & Rogers, B. T. (1979).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Self-other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4), 499-514.
- Lane, M. I., & Messe, A. L. (1972). Distribution of insufficient, sufficient, and oversufficient rewards: A clarification of equity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2), 228-233.
- Locke D. K., Craig, T., Baik, K. & Gohil, K. (2012). Binds and bounds of communion; Effects of interpersonal values on assumed similarity of self and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3), 879-897.
- Martin, P. S. (1994). Rationalizing the Irrational: The Treatment of Untenable Federal Civil Jury Verdicts. *Creighton Law Review*, 28, 683-732.
- Messik, M. D., & Sentis, P. K. (1979). Fairness and prefer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5, 418-434.
- Mezulis, H. A., Abramson, Y. L., Hyde, S. J., & Hankin, L. B. (2004). Is there a universal positivity bias in attribu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individual, developmental,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30(5), 711-747.
- Montoya, M. R., & Horton, S. R. (2004). On the importance of cognitive evaluation as a determinant of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5), 696-712.
- Myers, G. D. (2008). *Social Psychology*. NY: McGraw-Hill.
- Perilloux, C., Easton, A. J. & Buss, M. (2012). The misperception of sexual interest. *Psychological Science*, 23(2), 146-151.
- Robert, V. J. (2008). The role of criminal record in the sentencing process. *Crime and Justice*, 22, 303-362.
- Rogers, B. T., Kuiper, A. N. & Kirker, S. W. (1977). Self-reference and the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9), 677-688.
- Ross, D. L., Amabile, M. T., & Steinmetz, L. J. (1977). Social roles, social control, and biases in social-perception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7), 485-494.
- Savitsky, K., van Boven, L., Epley, N., & Wight, M. W. (2005). The unpacking effect in allocations of responsibility for group task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5, 447-457.
- Simon, A. H. (1972).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In C. B. McGuire & R. Radner (Eds.), *Decision and Organization* (pp.161-176).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Taylor, E. S., & Brown, D. J.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2), 193-210.
- Tversky, A., & Kahneman, D. (1974).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Science*, 185, 1124-1131.
- Van Baaren, B. R., Holland, W. R., Steenaert, B., & van Knippenberg, A. (2003). Mimicry for money: Behavioral consequences of imi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393-398.
- Winkler, D. J. & Taylor, E. S. (1979). Preference, expectations, and attributional bias: Two field stud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9(2), 183-197.
- 1 차원고접수 : 2013. 03. 26.
수정원고접수 : 2013. 08. 26.
최종게재결정 : 2013. 08. 26.

〈Special Section〉

Is a Satisfactory Tax System Possible?: Bounded Rationality and Selfishness in Tax Decision

Jin an, Lee

Seung-Hyuk, Choi

Taekyun Hur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aimed to examine tax payers' rationality and selfishness in their judgment of tax system. We developed a standard scenario describing the average Korean tax payer and then 15 versions of scenarios varying on tax-irrelevant factors such as nationality, education, occupation, housing type, income source, political attitudes, and criminal records including income which is crucial for tax imposing. 1,361 Korean adults read one of these scenarios and reported estimates of proper amount of income tax in rate. The analyse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osed tax rate between types of housing type. That is, the participants imposed higher tax rate toward house owners than tenants. And, income level and occupation interacted in impacts on imposed tax rate. Imposed tax rates were increased toward professionals as the income increased, but the trend was not the case for office workers and self-employers. Most interestingly, people imposed lower tax rate when they perceived the income levels of scenarios similar to their own incom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axpayers often make an irrational and selfish judgment on the fair tax system. We discussed social psychological contribution to enhance social consensus and subjectively fairness in tax system.

Key words : tax perception, adequate tax rate, irrationality, self-serving tendency, in-group bias

부 록

각 집단별 인구통계학적·사회경제적 특성 분포, 단위: 명(%)

	본인성별		본인직업							본인소득분류		연령					전체	
	남자	여자	대학 (원)생	직장인	전업 주부	자영 업자	프리 랜서	무직	기타	4,400만 원미만	4,400만 원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원형	35 (42.7)	47 (57.3)	8 (9.8)	54 (65.9)	12 (14.6)	4 (4.9)	2 (2.4)	0 (0.0)	2 (2.4)	42 (51.2)	40 (48.8)	15 (18.3)	18 (22.0)	23 (28.0)	20 (24.4)	6 (7.3)	82	
연소득	8,800만원	55 (56.7)	42 (43.3)	11 (11.3)	54 (55.7)	13 (13.4)	7 (7.2)	4 (4.1)	4 (4.1)	47 (48.5)	50 (51.5)	20 (20.6)	21 (21.6)	41 (42.3)	13 (13.4)	2 (2.1)	97	
	3억원	44 (51.2)	42 (48.8)	7 (8.1)	50 (58.1)	18 (20.9)	5 (5.8)	2 (2.3)	0 (0.0)	4 (4.7)	43 (50.0)	43 (50.0)	13 (15.1)	21 (24.4)	39 (45.3)	10 (11.6)	3 (3.5)	86
직업	공무원	52 (59.8)	35 (40.2)	8 (9.2)	50 (57.5)	17 (19.5)	9 (10.3)	2 (2.3)	0 (0.0)	1 (1.1)	41 (47.1)	46 (52.9)	20 (22.7)	15 (17.0)	32 (36.4)	18 (20.5)	3 (3.4)	87
	자영업자	51 (60.7)	33 (39.3)	9 (10.7)	50 (59.5)	15 (17.9)	9 (10.7)	1 (1.2)	0 (0.0)	0 (0.0)	44 (52.4)	40 (47.6)	16 (18.6)	11 (12.8)	39 (45.3)	14 (16.3)	6 (7.0)	84
연소득 8,800만원 x 직업	변호사	56 (58.9)	39 (41.1)	6 (6.3)	63 (66.3)	14 (14.7)	6 (6.3)	2 (2.1)	4 (4.2)	0 (0.0)	48 (50.5)	47 (49.5)	17 (17.9)	20 (21.1)	35 (36.8)	17 (17.9)	6 (6.3)	95
	자영업자	49 (50.5)	48 (49.5)	12 (12.4)	51 (52.6)	16 (16.5)	13 (13.4)	2 (2.1)	1 (1.0)	2 (2.1)	47 (48.5)	50 (51.5)	17 (17.5)	23 (23.7)	36 (37.1)	19 (19.6)	2 (2.1)	97
학력	MBA	55 (62.5)	33 (37.5)	11 (12.5)	52 (59.1)	10 (11.4)	6 (6.8)	2 (2.3)	5 (5.7)	2 (2.3)	44 (50.0)	44 (50.0)	20 (22.7)	15 (17.0)	32 (36.4)	18 (20.5)	3 (3.4)	88
	고졸	46 (53.5)	40 (46.5)	9 (10.5)	53 (61.6)	13 (15.1)	5 (5.8)	3 (3.5)	3 (3.5)	0 (0.0)	45 (52.3)	41 (47.7)	16 (18.6)	11 (12.8)	39 (45.3)	14 (16.3)	6 (7.0)	86
거주지 점유형태	전세	36 (52.2)	33 (47.8)	8 (11.6)	41 (59.4)	15 (21.7)	3 (4.3)	1 (1.4)	0 (0.0)	1 (1.4)	32 (46.4)	37 (53.6)	15 (21.7)	12 (17.4)	30 (43.5)	8 (11.6)	4 (5.8)	69
	월세	27 (45.8)	32 (54.2)	7 (11.9)	31 (52.5)	13 (22.0)	4 (6.8)	1 (1.7)	2 (3.4)	1 (1.7)	35 (59.3)	24 (40.7)	12 (20.3)	11 (18.6)	25 (42.4)	5 (8.5)	6 (10.2)	59
재산출처	상속	53 (58.2)	38 (41.8)	8 (8.8)	61 (67.0)	12 (13.2)	6 (6.6)	4 (4.4)	0 (0.0)	0 (0.0)	46 (50.5)	45 (49.5)	18 (19.8)	20 (22.0)	31 (34.1)	17 (18.7)	5 (5.5)	91
국적	외국인	55 (66.3)	28 (33.7)	11 (13.3)	49 (59.0)	11 (13.3)	6 (7.2)	2 (2.4)	1 (1.2)	3 (3.6)	43 (51.8)	40 (48.2)	16 (19.3)	16 (19.3)	33 (39.8)	11 (13.3)	7 (8.4)	83
정치성향	보수	54 (60.7)	35 (39.3)	10 (11.2)	51 (57.3)	16 (18.0)	6 (6.7)	4 (4.5)	0 (0.0)	2 (2.2)	45 (50.6)	44 (49.4)	10 (11.2)	26 (29.2)	32 (36.0)	16 (18.0)	5 (5.6)	89
	진보	49 (61.3)	31 (38.8)	9 (11.3)	47 (58.8)	7 (8.8)	8 (10.0)	3 (3.8)	1 (1.3)	5 (6.3)	39 (48.8)	41 (51.3)	11 (13.8)	21 (26.3)	34 (42.5)	11 (13.8)	3 (3.8)	80
전과여부	전과	45 (51.1)	43 (48.9)	8 (9.1)	55 (62.5)	15 (17.0)	4 (4.5)	3 (3.4)	1 (1.1)	2 (2.3)	47 (53.4)	41 (46.6)	20 (22.7)	20 (22.7)	33 (37.5)	13 (14.8)	2 (2.3)	88
합계		762 (56.0)	599 (44.0)	142 (10.4)	812 (59.7)	217 (15.9)	101 (7.4)	38 (2.8)	22 (1.6)	29 (2.1)	688 (50.6)	673 (49.4)	247 (18.1)	29 (121.4)	538 (39.5)	216 (15.9)	69 (5.1)	1361
X^2	20.428		84.616							3.747		49.605						